## 평가지표[질향상노력] 기준4 인권지킴이 변경사항 안내문

#### 1 주요 변경사항

- '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 한하여 아래사항(인권관리자 선정, 인권 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방식)을 포함하여 인권지킴이 사업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기록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자체계획 수립·운영 시 인정함

#### 2 2025년 시설급여 평가지표

평가지표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기준	점수	채점기준	
4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 지표적용기간

■ 기준4: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 확인방법

#### 기준(4)

-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록(인권지킴이 방문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 기관이 인권지킴이 시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며, 직원이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③ 확인방법 보완사항

### 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Q

##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5년에 한하여 아래사항(인권관리자 선정,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방식)을 포함하여 인권지킴이 사업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기록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기관이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위의 인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기관내 자체 인권관리자 선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선정)
- 2.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 3. 운영방식: 매월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자가점검(필수사항 포함) … [붙임]
  -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필수사항: 점검일자, 점검자명
  -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25.1.) ~ 2025년 평가일

## (예시)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

- 시설 설비 측면 인권 취약 분야 개선 및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자체 시정계획 수립
- ☞ 탈의 및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설치, 다른 성별의 입소자를 같은 침실에서 돌봄 등 시설의 구조적 설비에서 인권침해요인 시정방안 마련 또는 직원회의 등에서 개선사항 논의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 취약 분야 개선 및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자체 시정계획 수립
- □ 입소자 면담·관찰 등을 통해 돌봄 인력의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공 등 인권 침해부문 점검 및 시정방안 마련
- 시설 내 인권지침 구비,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및 자체 시정계획 수립
-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구비 여부, 의무교육 수료 여부, 학대 신고 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여부 등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붙임]

#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일:

점검자명:

연번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 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작성방법: 결과는 O, X표기